

Ⅰ. 인삼의 안전성 및 품질 문제

- 1. 인삼의 안전성 문제
- □ 인삼은 특성상 재배 과정에서 병해충 발생이 많고 피해도 심함
 - 반음지성 식물로 재배기간이 길고 차광시설재배로 일반 농 작물에 비해 병해충의 서식 밀 도가 높음
 - 타 작물에 비해 초기 자본투자 가 많고 다년생 작물로 병해 발생시 수량 및 상품 피해가 심각하여 농가에서 주로 예방 적 방제실시
- □ 인삼에 대한 농약사용은 '98 년 이전에는 농가에서 임의대로 사용하였으나 이후부터 안전사용 및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
 - 인삼에 사용할 수 있는 등록농 약 25품목(살충제 2, 살균제 23) (표1)

- □ 국내 유통중인 인삼(백삼)을 수거하여 잔류분석을 실시한 결과 품목폐지 농약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
 - 소비자모임에서 인삼 전문인 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백삼 10점에대한 분석결과
 - -품 목 폐 지 농 약 인
 Quintozene과 미등록 농약
 인 Procymidone이 각각 8
 점에서 기준초과 검출
 - 농관원이 서울 경동시장, 충남 금산시장 등 시중 유통되고 있 는 국산 백삼 20점을 수거하 여 잔류농약 분석(02.4-5)
 - '87년 품목폐지된
 Quintozene과 인삼적용약
 제가 아닌 Procymidone가
 각 8점 및 18점에서 검출
- □ 인삼수출품에서 농약이 검출 되어 반품사례 발생

- •독일 89. 90. 93년 인삼정에 서 Quintozene과 Procymidone이 검출
- 미국 '98.7월 인삼캡슐 백삼 류 '00.02월 백삼에서 Quintozene과 Procymidone 이 검출 '05.1월 인삼차에서 농 약 검출
- □ 품목폐지 및 안전사용 기준 미설정 농약 검출
 - Procymidone은 적용약제가 아니지만 농산물의 잔류농약 잠정기준 적용(우리나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해당농약의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으로 감 자의 허용기준치 0.1ppm 적 용(표2)
- 일부 인삼재배농가에서 적용 약제가 아닌 농약과 불법농약 을 구입 안전사용 기준을 이행 하지 않고 관행에의한 사용

Ⅱ. 안전성 확보 방안

- 1. 안전성에 대한 관련제도 대폭 개선
- □ '04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 의 안전성조사 대상품목에 포함, 부적합품에 대한 강력한 조치
 - '04년부터 수확전 안전성조사 를 실시, 부적합품은 출하연 기, 폐기 등 강력한 조치로 안 전인삼 생산정착
 - □ 안전성 교육의 대폭 강화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준수 의무화

- 대농가 홍보 교육
- 중앙단위 교관반을 편성하여 농업인 등에 대한 농약안전사 용 등 안전성대책 교육 실시
- 불법농약 유통근절 및 적용시 험확대조치
- 인삼의 안전성조사 여건조성 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농관원이 생육중인 2 · 3 · 5년근 각 100점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
- 단계별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 수대책 수립

□ 친환경적 인삼재배 방법 확대

- 토양검정의 활성화로 무명지 에 인삼 재배
- 저농약 인삼 재배
 - 미세물제재(토양개량제) 공 급촉진
 - 표준 규격에 의한 해가림시 설 설치로 탄저병 방제 지도
 - 병해충 예찰활동을 통한 예 방위주의 저농약 인삼재배 교육

Ⅲ. 불법유통 근절 등 품질관 리 강화

- □ 품질확인결과 위격품에 대한 위격검사 대상검사원 처벌 및 자 체 검사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또 는 지정취소(행정처분)
 -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원은 농협중앙회 내부규정(위격

- 기준 및 처벌기준)에 따라 자체처벌
- 위격대상 검사품에 대해서 는 수검자(자체검사업체)가 자진 수거하여 재검사후 유 통하고 농약잔류 허용기준 초과품은 페기 조치하고 이 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
 - ※ 제조물책임법 및 리콜제 도와 같음
- 위격대상 검사원에 대한 처 벌기준 법제화(시행규칙)
- 농관원은 지정검사기관·자 체검사업체의 검사원을 대상 으로 검사기술 능력배양을 위 한 검사기술교육을 실시하도 록 규정함에 따라 농관원에서 는 검사기술교육 및 정신교육 을 병행실시
- 현행 인삼류 미검사품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었던 것을 벌칙으로 강화됨에 따라 경동시장 · 금산 인삼시장의 미검사품 유통은 근절될 것으로 판단됨.
- □ 미검사품 등 부정유통 근절대 책 추진으로 경동시장은 4월부터 상인 보유 미검사품을 현지에서 검사후 판매
 - 금산시장은 자치단체 · 농관 원 및 상인대표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유통근 절이 되지 않을 경우 집중단속
- □ 법 개정을 통한 부정유통 제

도개선

- 자체검사업체의 검사대상 규정, 검사기준 부적합품과 미검 사품에 대한 처분과 처분명령 위반자 처벌 및 판매자 처벌 강화
- □ 품질확인을 위한 감정요원의 편성 · 운영방법 개선
 - 농관원 소속 공무원들로만 구성하여 실시하던 것을 지정검사기관,자체검사업체(1~2개업체)에서 5~7명을 선발하여확인
 - □ 위격 검사원에 대한 처벌강화
 - 현행 규정에는 지정검사기관 의 경우에는, 위격검사원은 주 의, 경고, 징계 등 시정조치하 고, 자체검사업체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하던 것을.
 - 지정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 체 검사원 모두 위격검사를 하 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자격 을 정지(경고→3개월, 징계→ 6개월)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검토

□ 품질확인 결과 부적합품의 재 검사, 폐기 등 조치

- 품질확인결과 연근, 등급 등 위격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회 수하여 재검사 명령조치하고, 농약잔류 허용기준 초과품은 회수한 후 페기조치
- □ 인삼류 품위. 연근 부적합품

기획특집 5

검사기관(업체) 특별관리

• 유통되는 검사품에서 자주 부 적합품이 발견되는 지정검사 기관이나 자체검사업체에 대 해서는 수시로 시료를 구입하 여 품위를 확인하는 등 집중 관리

□ 인삼류 검사기관·자체검사 업체 및 유통업체 간담회 개최

• 현행 검사제도, 유통실태 등 문제점에 대하여 간담회를 주 기적으로 개최하여 인삼의 품 질강화, 전건한 유통질서 확립

Ⅳ. 위격검사 재발 방지 대책

- 1. 위격검사 재발 생산 단계별 방지 대책 (연급혼입)
- □ 원료삼 매입단계
- 원료삼 매입 및 채굴시 연근확 인서 내용 철저히 확인으로 가 공시 연근호입 차단.
- 건조후 중간단계 인삼보관시 생산자 및 채굴일별로 철저히 관리 혼입을 차단.(증간단계 인삼보관함 전면에 표시)

□ 세삼작업 및 건조단계

- 세삼 및 건조단계에서 채굴일 및 생산자가 동일한 수삼만을 세삼 및 건조하여 다른 년근 및 타생산자 인삼의 혼입을 완 전 차단.(하루에 동일채굴지만 세삼)
- 건조시 각 건조실별로 타 연근

및 타 생산자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조실 입구에 생산자 및 채굴지 표시, 건조 담당자 지정하여 건조 담당자만이 건 조실 출입을 통제하여 혼입을 차단

□ 연근구분 보관

- 연근구분 보관시 년근별 보관 함의 색을 달리하여, 종업원의 혼란으로 인한 혼입을 철저히 방지함과 동시에 이동시 혼입 방지 차단
- 연근구분 보관시 보관함에 생산자, 연근, 채굴지, 채굴지역을 표시하여 관리
- 연근별 보관창고를 다르게 관리함과 동시에 불가능할 경우 동일 창고내 년근별 구역 표시로 혼입방지.

□ 검사과정

• 검사과정에 모집단검사와 편 급조정을 위해 최대한 동일한 중간제품 인삼을 철저히 사용 하며, 부득이할 경우, 색깔별 로 보관된 함을 이용, 연근혼 입을 최대한 방지.

2. 등급혼입 방지 대책

- □ 등급혼입방지 대책
- 등급별 정확한 기준과 샘플을 선정하여, 기준별로 철저히 분 리
- 등급별 분류 과정에 1차 분류 후, 다음날 2차 분류를 통해서 등급분류 철저.
- 검사 물량 0.5%를 모집단 분

- 류 검사하여, 5%이상 등급 오 류 발견시 재검사
- 분류한 다른 등급의 인삼을 서 로 다른 보관함에 관리.

∀. 중국인삼 유통의 문제점 및 불법유통 근절 대책

〈문제점〉

- □ 밀수인삼의 근절을 위한 밀수-유통-판매등 일련의 연결과 정단절 노력이 부족
- □ 인삼류와 인삼류를 2차 가공 한 인삼 제품은 유통상 밀접히 관 계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가 달 라 불법 유통 근절이 어려움
- □ 일선현장의 정보수집 가능이 부족하고 중국삼과 국내인삼에 대 한 식별능력 부족
- □ 중국인삼 불법유통을 근절하 기 위한 농협인삼조합과 소비자 단체의 자체 감시기능이 미약
- □ 인삼류는 검사증지를 부착하는 검사제품만 유통되어야 하나 가격이 싼 제품 구입을 원하는 소 비자들로 인해 미검사품이 유통
- □ 밀수인삼 근절을 위해 관세 청, 농림부, 보건복지부, 검찰청 경찰청 등이 밀수인삼 단속을 위 한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보따리상, 전문밀수사범, 중 간거래상, 불법판매상에 대한 정보공유

(丑1)

인삼에 사용할 수 있는 등록 농약

(농약관리법 제8조 및 제17조 관련)

구 분	적 용 병 충 해	적 용 병 충 해	상 표 명	사 용 기 준	허용기준 (pp m)	
	모잘록병	토로스(분)(수)	리조렉스	파종시까지1회이내	1.0	
	뿌 리 썩음병	다조메(입)	<u> </u>	파종5주전	_	
		메탄소디움(액)	킬퍼	정식 4주전 1회이내	0.05	
	명명	메타실(수)	리도밀,메타실,이비엠메사리			
		메타실엠(수)	리도밀엠지,메타실엠			
	잿 빛 곰팡이병	디에토벤카브.가벤다(수)	깨끄탄	수확80일전 4회이내	0.5	
		토랄후르아니드(수)	유파렌엠	수확45일전 4회이내	0.3	
		펜헥사미드	델도	수확21일전 5회이내	_	
		포리옥신(수)	동부포리옥신	수확45일전 5회이내	_	
	점무늬병 잿빛곰팡이병	포리옥신(수)	동부포리옥신	수확45일전 5회이내	_	
	점무늬병	포리옥신디(수)	영일바이오	수확45일전 2회이내	_	
구분		만코지(수)(입상수)	다이센엠45,더센엠,들소리	수확45일전 5회이내	0.1	
		피리메타닐(수)(액상수)	스칼라(수)	수확30일전 3회이내	0.3	
			미토스(액상수)	수확45일전 4회이내	0.5	
		디페노코나졸(수)(입상수)	프르겐	수확35일전 7회이내	0.2	
			보가드(입상수)	수확50일전 5회이내		
		코퍼설페이트베이직(수)	네오보르도	발병초 10일간격	_	
		크레속심메칠(입상수)	해비치	수확21일전 4회이내	0.2	
		싸이프로디닐(입상수)	유닉스	수확40일전 5회이내	1.0	
	점무늬병 탄 저 병	아족시스트로빈(수)(액상)	아미스타(수)	수확45일전 4회이내	0.5	
			오티바(액상)	수확7일전 7회이내		
		이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이트	벨쿠트	수확45일전 4회이내	0.1	
		포리옥신비.이미녹타딘. 트리스알베실레이트(수)	적토마	수확21일전 3회이내	0.1	
살	달팽이류	메타알데하이드(입)	나메톡스	달팽이 발생초기	-	
살 정 제	풍뎅이류	피레스(유)	아리보,피레탄,푸른꿈	수확45일전 4회이내	0.1	

(주)허용기준은 건삼 기준이며, 수삼은 25%, 인삼농축액은 200%를 적용함.

기획특집 5

- 검찰, 경찰, 시.도 공무원 합동 으로 주요 인삼시장에 대한 집 중단속
- □ 현재 뿌리 인삼류와 인삼 가 공제품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인삼 에 대한 일원적 관리를 위한 농림 부, 보건복지부간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
 - 밀수 인삼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인삼에 대한 합동단속 추진
- □ 일선현장 정보수집기능 강화 와 불법유통 위반사범에 대한 단 속의 실효성 재고를 위해 자치단

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 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부여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 자와 그직무범위에관한 법률」 개정 추진(2.17 법무부에 개정 요청)
- □ 인삼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통해 중국산 인삼 불법유통이 근절 되도록 유통 혁신체계 구축
 - 농협과 인삼농가간 인삼 계열
 화 사업으로 브랜드 유통 정착
 - 규격화되고 안전한 수삼유통을 위한 세척삼 유통체계 확립

- 능협중앙회의 MMA 물량 및 관세청에 의해 위탁받은 한국보훈 복지공단의 공매 밀수품 인삼관리 철저
 - 농림부, 보건복지부,관세청간 의 정보공유 체계 확립
 - 낙찰업체의 인삼 유통.판매경 로에 대한 추적관리
 - 중국산 인삼 불법유통근절을 위한 인삼조합과 소비자 차원 의 노력 강화
 - 검사품 우수성 홍보 및 검사품 사기운동 전개

(丑2)

농산물의 잔류농약 잠정기준 적용

- 1)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16(관보14469호, 2000.3.3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2-1(2002.1.4)
- 2) 고시기관: 식품의약품안정청
- 3) 허용기준 적용순서
 - 가) 우리나라보건복지부 잔류허용 기준 적용
 - 잔류허용 농작물 명에 기타 채소류,기타 과실류 등으로 기준이 설정된 것은 허용기준이 있는 것으로 간주
 - 나) 보건복지부 잔류허용 기준이 없을 경우 Codex 기준 적용
 - 잔류허용 농작물 명에 채소, 과채류, 잎줄기 채소류, 과실류, 기타 등으로 기준이 설정된 것은 Codex 허용기준이 있는 것으로 간주
 - 다) Codex 기준이 없을 경우 보건복지부 농약잔류 허용기준에 해당농약 잔류기준 중 유사한 농산물(농산물이 분류 중 대분류에 속한 품목)의 최저기준
 - 채소류는 소분류(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중 최저기준
 - 과실류는 소분류(이과류, 감귤류, 핵과류, 장과류, 열대과일류)중 최저기준
 - 견과종실류는 소분류(견과류,종실류)중 최저기준
 - 라) 가).나),다) 항에도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출된 농약은 우리나라의 잔류허용기준 중 해당농약의 최저기준

♣ 분석결과 수치취급

- 허용기준의 규격치 보다 한 자리수 더 구한 값에서 사사오입 하여 적.부 판정
- ※ 상추에서 Procymidone이 0.245ppm 검출시(허용기준 0.2ppm이라 가정할때) ⇒ 적합으로 판정

(丑3)

인삼(건조품)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식품의약안전청 고시 제2001-4(2001. 1. 12)호 → 2003. 4. 1 시행

농 약 성 분 명	주 요 품 목	농 약 명	허용기준 (pp m)	비고
(1)C C E (DDT)	DDT분제	살충제	0.1	'69품목폐지
(2)비에치씨(BHC)	BHC분제	살충제	0.2	79품목폐지
(3)알드린및디엘드린(Aldrin&Dieldrin)	알드린 분제 디엘드린 분제	살충제	0.01	71품목폐지
(4)엔드린(Endrin)	엔드린 유제	살충제	0.01	71품목폐지
(5)파라치온(Parathion)	파라치온 유제	잎말이나방	0.1	
(6)메타락실(Metalaxyl)	메타실 입제	역병	1.0	
(7)엔도설판(Endosulfan)	지오릭스 유제	진딧물	0.2	
(8)퀸토젠(Quintozene)	피씨엔비 분제	잘록병	1.0	'87품목폐지
(9)캡탄(Captan)	캡탄 수화제	탄저병	2.0	
(10)다이이지(는(Diazinon)	다수진 입제	이화명나방	0.1	
(11)카벤다짐(Carbendazim)	가벤다 수화제	탄저병	0.5	
(12)델타메스린(Deltamethrin)	델타린 유제	진딧물	0.02	
(13)디에토펜카브(Diethofencarb)	디에토펜카브수화제	잿빛콤팡이	0.5	
(14)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디페노코나졸수화제	점무늬병	0.2	
(15)싸이퍼메스린(Cypermethrin)	피레스유제	풍뎅이	0.1	
(16)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아족시스트로빈수화제	역병.탄저병	0.5	
(17)토릴플루아니드(Tolylfluanid)	토릴플루아니드수화제	잿빛곰팡이	0.3	
(18)톨크로포스메칠(Tolclofosmethyl)	토로스수화제	모잘록병	1.0	
(19)이미옥타린(Iminoctadin)	수화제	살균제	0.1	
(20)피리메타닐(Pyrimethannil)	수화제	살균제	0.3	
(21)메탐-소디움(Metam-sodium)			0.05	
(22)펜핵사미드(Fenhexamid)			0.5	

(주)건조품 100g 기준임. (농축인삼류: 건조품의 200%, 수삼: 건조품의 25%)